WTO 개도국 지위 졸업의 의미와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

2020년 7월

임 정 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목 차

1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의 의미

2 국제사회의 개도국 분류 기준과 관행

3 개도국 지위 관련 여건변화와 논의 동향

4 개도국 지위 졸업의 파급 영향

5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1.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의 의미

◆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MA, DS 등)

(1) 시장접근(MA) 분야

- **농산물 관세감축 의무: 선진국의 *2/3* 수준**

- UR 협상: 선진국 전체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감축(개도국은 24%와 10%)

- DDA 협상: 관세구간별 최소 50% ~ 최대70% 감축(개도국 최소 33.3% ~최대 46.7%)

<표 1> 농산물 관세감축률 비교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UR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20%	50%	0~30%	33.3%	선진국: 평균 36% 감축 개도국: 평균 24% 감축
2구간	20~50%	57%	30~80%	38.0%	
3구간	50~75%	64%	80~130%	42.7%	
4구간	75% 이상	70%	130% 이상	46.7%	

1.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의 의미

(2) 국내보조(DS) 분야: 감축대상 보조 (AMS)

- **농업보조금 감축의무 :선진국의 2/3 수준**

  - UR 협상: 선진국 AMS 20% 감축의무 (개도국 13.3% 감축)

  - DDA 협상: 선진국 AMS 수준별 최소 45% ~ 최대 70% 감축(개도국 30% 감축)

◆ **최소허용보조:** UR 협상 **선진국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 10%)**

- **DDA 협상 최소하용보조 감축율: 선진국 50% (개도국 33.3%)**

<표 2> 농업보조금 감축율 비교

국가	AMS	Deminimis	UR
EU	70%	50%	선진국: AMS 20% 감축 개도국: AMS 13.3% 감축
미국 · 일본	60%		
기타 선진국	45%		
개도국	30%	33.3%	

1.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의 의미

(3)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보다 더 긴 이행기간 부여

- **UR** 협상**:**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 **DDA** 협상**:**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관세**),** **8**년**(**보조금**)**

(4) 개도국에만 허용되는 기타 특혜

- **UR** 협상**:** 개도국에게만 허용되는 감축면제보조**(**예**:** 농업투자보조**)**
- **DDA** 협상**:** 관세상한 선진국 **100%,** 개도국 **150%,**

  개도국에 허용되는 관세감축 면제 품목**(**특별품목**)** 등

1.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의 의미

◆ 지금까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의 효과

1)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기여

- 선진국에 비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보조금 운영에 신축성 확보

2) UR 농업협상 결과의 순조로운 이행에 기여

- 농산물 시장개방 약속 이행과 점진적 구조조정 추진

3) 사회적 비용 및 국민경제 부담 경감에 기여

- 농업과 농촌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가재정부담 완화

2. 국제사회의 개도국 분류 기준과 관행

◆ 국가 지위 분류 기준

-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 국가 분류 기준은 없음**

  -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범이 없음
  - 1인당 GDP 등 일부 계량 가능한 경제지표로만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국가 지위(선진국과 개도국) 분류 관행

- ‘자기선언의 원칙’ : **Self Declaration Principle**

2. 국제사회의 개도국 분류 기준과 관행

◆ WTO 체제에서 개도국 분류

- **GATT 및 WTO 체제도 개도국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규정이 없음**
  - 회원국의 자기선택에 대한 타회원국의 암묵적 동의에 입각

- **UR 이행계획서상 선진국: 국내보조 이행계획서**
  - 미국, 캐나다,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남아공 등 13개국

- **WTO 통계국 분류상 선진국 :**
  - EU 회원국(28개국),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38개국

- **WTO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분류는 모호한 실정이나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은 선정 발표**
  - 일반적으로 UN에 의해 지정된 최빈개도국 명부 이용
  - 협정문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빈개도국 선정
  - 기초식량 순수입국인 26개국

2. 국제사회의 개도국 분류 기준과 관행

<표 3> WTO에서 분류한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 분류

	최빈개도국 (49개국)			NFIDC
	WTO 회원국	WTO 옵서버국	WTO 미참여국	
국가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넹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지부티,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레소토,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몰디부, 말리, 모리타니아, 미얀마, 모잠비크, 니제르, 네팔,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 솔로몬제도,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부탄, 코모로스, 적도기니, 에디오피아, 라오스, 라이베리아,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바누아투, 예멘	티모르-레스떼,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키리바시, 투발루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코트리부아르, 쿠바,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가봉, 온두라스, 자메이카, 요르단,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몽골, 모로코, 나미비아, 파키스탄,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네갈,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베네수엘라
계	32개국	12개국	5개국	26개국

출처: WTO 농업위원회 (G/AG/5/Rev.8)

2. 국제사회의 개도국 분류 기준과 관행

◆ 주요 국제기구 분류 현황

- **UN, IBRD, IMF, FAO 등 주요 국제기구**

  - 국별지위 유형은 국제기구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
  -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정의 및 기준은 없음
  - 편의상 나름대로의 기준에 기초하여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을 뿐임

-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며, 고소득 또는 선진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최빈개도국은 명확히 분류되고 있음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3년마다 공표(현재 50개국 선정)**

  - 1인당 GNP, 영양, 교육, 문맹률, 농업 및 수출 불안정성 등 지표
  - 주요 국제기구들이 UN이 작성 · 공포하는 최빈개도국 명부를 원용함

3. 개도국지위 관련 대내외 여건과 논의 동향

◆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를 둘러싼 여건변화

-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

(1)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제적 위상 증대

- 자동차, 선박, 철강, **IT** 등 세계적 경쟁력 보유

(2) 신흥개도국의 부상, 중국과 인도 등 거대 개도국의 국제무역 영향 확대

- 미국과 **EU**의 국제 무역질서 정립의 영향력 감소

(3)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별대우 강화

-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에 대한 비판적 시각

➢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위 졸업 압력 증대 및 개도국 세분화 움직임 가속화

3. 개도국지위 관련 대내외 여건과 논의 동향

◆ OECD 논의 동향

- **2002년 OECD** 무역위원회 국가 지위 분류 작업 시도

- 1인당 GNP, GDP 차지 수출 비중, 개발 관련 지표, 사회복지 관련 지표 등 활용

-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선진국 그룹으로 잠정 분류

- 한국과 멕시코의 반대로 비공개 처리

◆ WTO 논의 동향

- 지난 **UR** 협상부터 주기적으로 개도국 세분화 움직임 존재
- 특히, **DDA** 출범 이후 미국, **EU** 등의 불만과 문제 제기로 수면위로 부상
- 미국의 개도국 졸업 기준 제안**(2019년 1월 16일** 일반이사회**)**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시**(2019년 7월 26일)**

“ 부유한 나라임에도 자기선언으로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국가에 대해 더 이상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을 원용하지 못하도록 ***WTO*** *체제를 개혁할 것을 지시"*

3. 개도국지위 관련 대내외 여건과 논의 동향

◆ 미국의 개도국 졸업 기준 제안(2019년 1월)

(1) OECD 회원국, **(2) G20** 국가, **(3) WB** 고소득 국가, **(4)** 세계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표 4>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졸업 4가지 기준과 국가 현황

구분	OECD 회원국 (7)	G20 국가 (10)	고소득국가 (22)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17)
4가지 기준 충족 (1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3가지 기준 충족 (3개국)	터키, 멕시코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2가지 기준 충족 (12개국)	칠레,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칠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홍콩, UAE, 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UAE, 홍콩, 대만
1가지 기준 충족 (19개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안티구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오만, 브루나이, 마카오, 쿠웨이트, 파나마, 토바고, 카타르,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 세이셸, 우루과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3. 개도국지위 관련 대내외 여건과 논의 동향

◆ 트럼프 대통령 행정 지시 사항(2019년 7월 26일)

(1) **60**일 이내 진전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

(2) **90**일 이내 진전이 없을 경우 개도국 졸업 대상국 선정 발표, 양자차원의 필요한 조치 강구**(**예**:** 통상압력**,** 무역보복조치 등 **)**

- 특히 중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 **11**개국을 행정지시 문서에 제시

◆ 주요국 반응

(1) 대만**,** 브라질**, UAE:** 향후 개도국 지위 우대 추구하지 않을 것 선언

(2) 싱가폴**:** 지금까지 개도국 우대 주장해본 적 없다는 입장 표명

(3) 중국**:**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 없으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기여 입장 표명

(4) 한국**:**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

4. 개도국 지위 졸업의 파급 영향

◆ 정부의 개도국 특혜 중단 선언의 배경 (2019년 10월 25일)

(1) 국가 위상 증대로 더 이상 개도국 지위 활용 특혜 지속의 어려움

(2)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 농업분야 개도국 특별 대우 유지 가능

(3) 수출주도형 경제 기반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특히,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협상할 권리 보유를 전제로 개도국 지위 전면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서 특혜 주장 않는다**(not to seek)**는 입장 표명

◆ 향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 차기 WTO 협상 타결 시점이 중요 요인

- 단기적 영향: 차기 **WTO** 협상이 시작하여 타결될 때 까지는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음**(3년~5년** 이상 소요 예상**)**
- 중장기 영향: 차기 **WTO** 협상 타결로 선진국과 같은 대폭적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준의 부정적 영향 발생

4. 개도국 지위 졸업의 파급 영향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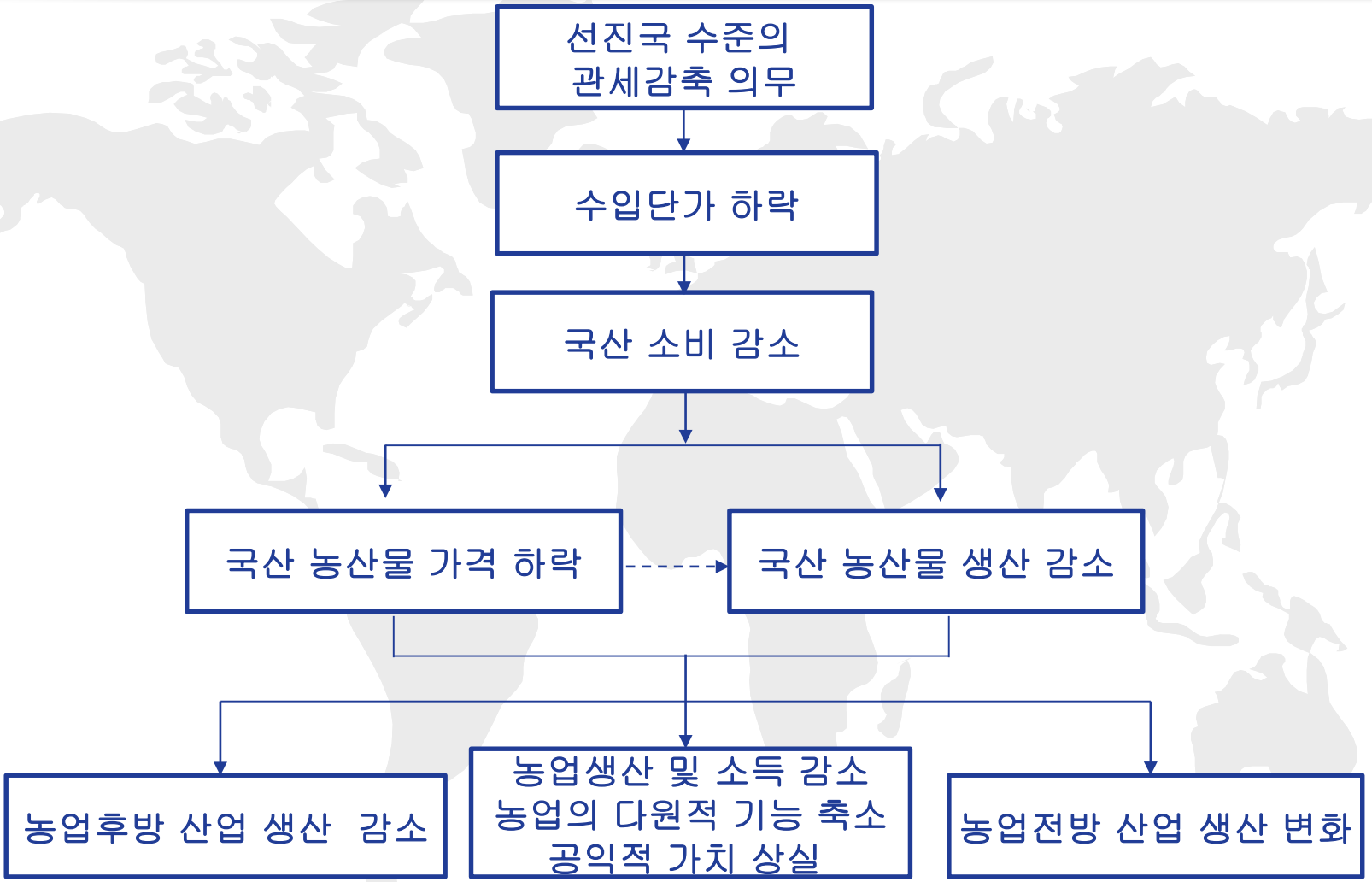

4. 개도국 지위 졸업의 파급 영향

◆ (피해 예상 품목) WTO 양허 관세가 높고, FTA 협정시 관세철폐 유예 등 민감성이 반영된 주요 품목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 인삼(222%~754%), 녹차(513%), 땅콩(230%), 감귤(144%) 사과(45%), 배(45%) 등 품목**

-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가능성이 높으나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된 원예작물

<표 5> 주요 원예작물 관세현황

	HS코드	WTO협정세율	한-미 FTA관세율(2020년)	한-미 FTA 양허유형	한-중 FTA관세율(2020년)	한-중 FTA양허유형
사과	0808.10.0000	45.0%	24.7%	단계철폐	45.0%	양허제외
배	0808.30.0000	45.0%	24.7%	단계철폐	45.0%	양허제외
오렌지	0805.10.0000	50.0%	50.0%	TRQ(3% 복리)	50.0%	양허제외
감귤	0805.21.1000	144.0%	57.6%	단계철폐	144.0%	양허제외
대추	0810.90.3000	611.5% 또는 5,800원/kg	152.8% 또는 1,450원/kg	단계철폐	611.5% 또는 5,800원/kg	양허제외
배추	0704.90.2000	27.0%	0.0%	단계철폐	27.0%	양허제외
무	0706.90.1000	45.0%	3.0%	단계철폐	30.0%	양허제외
대파	0703.90.9000	27.0%	0.0%	단계철폐	27.0%	양허제외
쪽파	0703.10.2000	27.0%	0.0%	단계철폐	27.0%	양허제외
양파	0703.10.1000	135% 또는 180원/kg	54% 또는 72원/kg	단계철폐	135%또는 180원/kg	양허제외
마늘	0703.20.9000	360% 또는 1800원/kg	144% 또는 720원/kg	단계철폐	360% 또는 1800원/kg	양허제외
고추	0709.60.1000	270% 또는 6,210원/kg	108% 또는 2,484원/kg	단계철폐	270% 또는 6,210원/kg	양허제외
생강	0910.11.1000	377.3% 또는 931원/kg	150.9% 또는 372원/kg	단계철폐	377.3% 또는 931원/kg	양허제외
참깨	1207.40.0000	630% 또는 6,660원/kg	252% 또는 2,664원/kg	단계철폐	630% 또는 6,660원/kg	TRQ(24,000T)
인삼	1211.20.1100	222.8%	0.0%	TRQ('18년부터 무제한)	222.80%	양허제외
녹차	0902.10.0000	513.60%	205.4%	단계철폐	513.60%	양허제외
땅콩	1202.30.2000	230.50%	92.2%	단계철폐	230.50%	양허제외

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 한-미 FTA협문, 한-중 FTA 협정문

5.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 대응전략

1) 협상 대책: 차기 **WTO** 협상에서 선진국과 같이 큰 폭의 시장개방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감축의 신축성 확보 노력

2) 국내 대책: 농업경쟁력 강화 및 선진형 농정 전환 모색

- **주요 품목별 가격/품질/안전/유통/홍보(브랜드) 경쟁력 증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및 농가 소득 지지**
- **농업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만 강화**
-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먹거리 지원정책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농업으로의 전환과 고부가 창출의 융복합 산업화**

5.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가. 기본방향

◆ **한국 농업의 고부가 창출의 융복합 산업화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

1. 한국 농업의 글로벌화 및 네트워크화
   ➡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생산과 '브랜드 가치 제고'

2.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된 고부가 생산기술 개발
   ➡ 첨단 과학기술 융합된 고부가 생산체제 구축 및 농업의 영역 확대

3. 기업가적 인재 발굴과 육성
   ➡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농업 경영 주체 육성

4. 농업시장의 영역 확대
   ➡ 전통적 1차 농업을 업으로 2,3차 산업과 연계 고부가 6차 산업화로 전환

5. 농촌공간의 휴양, 관광 및 문화산업화를 통한 신 수익창출
   ➡ 농촌다움, 생태환경자원, 전통문화자원을 미래 농촌의 중요 수익 창출 자원으로 활용

5.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필요**

  - 농업의 성장정체 문제, 소득분배의 문제,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에너지.자원위기 해결 등 위해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1.농정의 대상 : 생산자, 소비자,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
2.농정의 범위 : 생산중심 접근을 넘어 푸드시스템 관점, 농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까지 포괄
3.농정의 추진방식 : 정부직접 시장개입 지양, 민간.지방정부 역할 강화

< 국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

	현 재	미래
① 새로운 가치	단기 효율성, 구조조정	지속가능성(=성장+분배+환경)
② 통합적 접근	농업생산 중심	▪ Value chain 관점의 산업통합 (1×2×3차 연계=6차산업화) ▪경관, 환경 측면의 공간통합
③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	▪안전성・품질제고・환경 및 자원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 대응 ▪새로운 가치창출력 제고

5.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다. 5大 발전전략

1.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 국민소득증대, 웰빙 트렌드 확산: 고품질,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 국내 농업의 발전은 국내외 소비자의 선택과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

2.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의 연계

- 식품산업을 농업 및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민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 농업 등 1차 연관 산업 성장 견인, 고용 창출력, 경기침체 영향 적고, 문화.의약.유통 산업 등과 연계 경제적 파급효과 큼

3. 전통 농업과 연계된 바이오 소재 융복합 산업화

- 전통농업에 IT.BT.NT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화
- 종자산업, 식품가공/외식산업, 천연물 화장품/의약품의 소재산업화

4. 농식품 및 관련 산업의 수출산업화

-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기회요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해외소비지 시장 창출
- 아시아권 중심의 한류열풍 우리 농식품 수출 증가,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증대

5. 농촌공간의 휴양, 관광 및 문화산업화를 통한 신 수익창출

- 농촌다움, 생태환경자원, 전통문화자원을 미래 농촌의 중요 수익 창출 자원으로 활용

5.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라. 예상 효과와 한국 농업의 미래 모습

➢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환경/생태/경관 여건이 개선되고, 향상된 농업과 농촌이 지역농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소득 및 고용기회 창출**

- (고부가 6차 산업화) 수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화된 농식품, 국산 농산물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의 출현, 국내외 소비자가 열광하는 농식품(한식) 및 천연 바이오 제품, 농촌다움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공공재산업화) 농업 · 농촌의 다양한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 체험, 건강, 치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 극대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업과 농촌**

※ 한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 모습

- (농업)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하며, 믿고 찾는 농식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생명산업
- (농촌)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된 국민들의 휴양 및 체험의 공간
- (농민) 소비자/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필요한 소득을 얻고 보람/긍지를 갖는 경제주체

감사합니다.